

인도네시아 商標制度 解説



金正容

<特許廳 行政事務官>

① 商標制度의 特徵

인도네시아商標法의 特徵은 先使用主義와 審査主義를 採擇하고 있는 점과 異議申請制度는 없는데에 있다.

그리고 商標登錄後 6個月 以內에 使用을 開始하지 않았거나 3年 以上 계속하며 商標를 使用하지 않으면 登錄을 取消하는 이른바 不使用에 의한 取消審判制度가 있고 商標權讓渡는 반드시 營業과 같이 하지 않으면 認定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는 파리協約에 加入되어 있으므로 商標出願時에 優先權을 主張할 수가 있다.

또한 拒絕査定不服審判 또는 登錄無効審判 등은 地方法院(자카 타)에 請求하도록 되어 있고 商標權侵害罪는 刑法으로 規定하여 엄하게 다스리고 있다.

② 先使用權利

自己의 商品을 他人의 商品과 區別하기 위하여 商標使用의 權利는 最初에 商標를 使用한 者에게 許與된다. 商標사용의 權利는 商標를 附着한 全類의 商品에 關

聯되며 先使用을 中斷했다라도 未使用日로부터 3年間 當該權利는 有効하게 된다.

商標의 登錄을 최초로 出願한 자가 反證을 提示하지 않으면 當該商品의 最初使用者로 보지 않으며 出願인이 登錄後 6개월 以內에 인도네시아에서 商標를 使用하지 않았다면 역시 商標사용자로 보지 않는다.

또한 商標의 登錄을 출원하는 자가 그 商標를 붙인 商品을 全國博覽會(인도네시아政府가 認定하는 博覽會)에 出品한 期間中에 特許局에 출원했을 때는 展示期中 이미 인도네시아에서 이 商標를 使用한 자로 보게 된다.

다만 商標登錄出願은 博覽會開催後 6個月 以內에 해야 한다는 條件이 붙어있다.

商標의 使用이 1人 以上 일때의 共有商標登錄은 商品을 生産 또는 去來하고 있는 商業的施設을 共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때에만 許可된다.

③ 商標登錄出願節次

특허국에 商標登錄出願을 할때는 代理人을 통하여 인도네시아語로 作成된 正副 2通의 書類를 提出하고 다음의 것을 添付해야 한다.

(1) 商標를 使用하고 있는 商品의 見本 또는 商品에 관한 說明書

(2) 商標의 印版 1個

(3) 商標見本 10通

또한 商標의 登錄出願料金은 다음과 같다.

(1) 出願手数料 : 300루피아

(2) 審査料 : 200루피아(商品類別表示區分이 있는 商標審査의 경우)

(3) 登錄料 : 500루피아

한편 商標의 登錄出願이 拒絕되었을 때는 納入된 등록료는 返還되거나 출원료 및 심사료는 환불되지 않는다.

④ 不登錄事由

이미 公知된 圖形, 印刷文字나 道德이나 公序良俗에 反하는 圖形, 印刷文字는 商標로서 登錄될 수 없을 뿐더러 다음과 같은 商標도 登錄출원될 수가 없다.

(1) 特別顯著性이 없는 것(數字, 文字만으로 이루어졌거나 商品을 生産하는 方法, 商品의 分量, 形態, 目的, 體積, 價格, 重量表示 등)

(2) 國旗, 紋章, 姓名, 國際的인 會社略稱

(3) 國家機關의 證明, 認證用印章

⑤ 拒絕理由通知 및 拒絕査定

상표가 方式審査에 따라 登錄出願書類의 未備 및 不登錄事由로 등록되지 않을 때는 특허국은 출원인에 대하여 關聯規定에 따라야 한다는 要旨와 특허국이 결정 한 期間內에 출원을 取下할 것을 書面으로 通知하게 된다.

그러나 출원인이 이 규정에 따르지 않거나 출원을 취하지 않을 때 상표의 등록출원은 拒絕된다.

그리고 特許局審査官이 등록출원을 거절할 때는 直刻 書面으로 拒絕理由를 들어 출원인에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통지를 받은 자는 本人 또는 代理人이 署名한 審判請求書를 자카르타法院에 제출하여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登錄 및 公告

등록출원된 상표가 拒絕理由通知를 받았거나 拒絕査定을 받은 경우를 除外하고 특허국은 곧바로 備置된 一般登錄簿에 記載함과 아울러 상표의 登錄年月日, 登錄番號 및 出願을 受理한 年月日을 기재한다.

그러하여 상표의 등록은 일반등록부에 기재한 날로부터 効力이 發生된다.

더우기 등록에 대한 法的効力을 갖추기 위해 이미 제출한 바있는 願書 2通에 상표의 일반등록을 기재한 年월일 및 등록번호가 同時에 기재되어 1통은 출원인에 返還되고 1통은 특허국에 保管된다.

그리고 특허국은 印版에 의한 등록의 複寫, 출원인의 姓名, 住所 및 이들 상표를 붙인 상품에 관한 詳細한 內容을 인도네시아 官報의 附錄에다 公告하고 상표의 色彩가 상표의 特徵으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색채도 상세히 公告한다.

⑦ 無効審判

등록된 상표가 先使用者인 타인의 상표에 類似한 경우 또는 등록된 상표에 타인의 성명 또는 상표가 붙어 있는 경우 상표의 登錄無効를 請求하는 審判請求를 地方法院에 제출할 수가 있다.

다만 이 請求書는 請求人 또는 그 대리인의 서명을 必要로 하며 그 청구는 登錄公告가 있은 후부터 9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無効審判의 청구는 청구인의 권리가 법원의 確定判決에 起因되면 9個月後에 하여도 된다.

그리고 등록된 상표가 不登錄事由에 該當될 때 檢察官은 등록후 9개월 이내에 그 상표등록의 무효를 자카르타지방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검찰관은 다시 어떤 상표를 붙인 상품이 출원인이 제출한 見本 또는 說明書와 一致하지 않았을 때도 등록의 무효를 지방법원에 청구할 수가 있다.

거절이유, 거절사정에 대한 不服審判請求 또는 검찰관에 의한 무효심판청구가 있으면 특허국은 직각 자카르타지방법원 書記官으로부터 判決結果를 서면으로 통지받게 된다. 그러나 이 판결에 대해서는 高等法院에 抗訴할 수가 없다.

자카르타지방법원의 最終判決을 기다려 특허국은 상표를 등록하거나 상표가 기재되었던 일반등록부에 무효된 사실을 기재하게 된다.

그리고 특허국은 이 결과를 공고해야만 하는데 이에 등록된 상표등록의 무효, 미사용등으로 인한 商標權의 消滅등이다.

⑧ 權利의 消滅

상표권은 (1) 登錄名義人에 의하여 등록이 抹消되었거나 (2) 상표의 사용자로서 등록된 자가 등록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표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自認했거나 裁判官이 미사용의 판결을 내렸을 때 (3) 상표를 3년 또는 그 이상 사용하지 않았던 것을 商標權利者 스스로가 인정했거나 재판관이 미사용의 판결을 내렸을 때 (4) 상표가 등록된 날로부터 10년이 經過될 때까지 更新登錄을 하지 않았을 때 (5) 등록이 법원의 판결로 무효가 되었을 때 소멸이 된다.

⑨ 更新登錄

상표의 登錄更新은 등록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해야하며 新規登錄 때와같이 具備書類 및 登錄事由에 瑕疵가 없어야 한다.

특허국의 상표의 갱신등록을 했을 때는 更新登錄事項을 일반등록부에 記入하고 이를 複寫하여 출원인에 送達한다.

또한 특허국은 更新登錄申請에서 부등록사유가 있거나 거절이유가 발생하게 되면 상표의 갱신등록을 거절하게 된다.

⑩ 商標의 移轉

등록된 상표권을 타인에 양도하려면 이 상표를 사용하는 상품의 生産 및 去來會社가 讓受人에 양도하는 경우에 限한다.

이를 立證하기 위하여 拔萃된 約款을 특허국에 제출해야 하며 이것이 입증되면 當事者 또는 權利讓受人의 書面請求로서 이들 권리의 용도를 등록하게 된다. 權利讓渡의 登錄料金は 450루피아이다. ㉞